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규정의 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설립 후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적용되는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학이 일부 학과(부)를 이전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좋은 교육·연구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사 분류 기준(안 제5조)

교사를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학교시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기본시설로 포함하는 한편, 부속시설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시적으로 규정함.

나. 운영 중인 대학의 운영 기준(안 제13조 및 제14조)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는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

출한 면적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 그 확보 기준을 완화하며,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 등의 경우 학생 정원이 아닌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사·교원의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다.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및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등(안 제10조 및 별표 5, 별표6)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폐지하고, 학칙으로 그 인정범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산정기준을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로 완화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및 교사 기준을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 소속 교원의 겸직 및 교사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캠퍼스 간 정원이동 및 주·야간 정원 전환 기준(안 제16조제3항 및 제19조)

대학이 캠퍼스 간 정원을 이동하여 특정 캠퍼스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해당 캠퍼스의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함.

대학이 주·야간의 정원을 이동하여 교사확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마. 대학의 일부 이전(안 제18조)

대학이 일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위치의 교사 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규정.

바. 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 완화(안 제3조제3항 및 제21조)

필요한 경우 교사·교지의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대학이 단일 교지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사·교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완화함.

사.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간 통·폐합 촉진(안 제23조)

대학이 최소한의 요건(통·폐합 전 학년도의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을 갖춘다면, 통·폐합 후의 편제완성정원이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교육·연구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학문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사(校舍)”란 교지경계선 안팎에 위치하여 교육·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건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2. “교지(校地)”란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경계로 구분되는 용지를 말한다.
3.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겸임교원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5. “수익용기본재산”이란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에 속하는 기본재산 중 학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일반 원칙) ①이 영에서 교지,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이 영에서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③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 영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장 대학의 설립 기준

제4조(인가의 기준 및 신청)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사
2. 제6조에 따른 교지
3. 제7조에 따른 교원(인가 신청 당시에는 교원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
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④ 대학이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국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교사)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사
를 교육·연구 활동 등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도서관·체육관·연구실·행정실·학생회
관·대학본부·정보전산원,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

소 및 그 부대시설, 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과
같이 교육·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학칙으로 정한 기본적인 시
설과 그 지원 시설

2. 부속시설 : 기본시설 외에 학칙에 의해 설치하는 학과 또는 학부
(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의 농장·사육장·학술립·부속병원 등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밖에 부속학교, 연수원, 박물관 등 학칙으로 정
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

② 기본시설(교지 밖의 연구 관련 기본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따른 학생 1인당 교
사기준면적에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
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
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부 등에 주
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
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④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제2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제6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3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건축물의 부지
3.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 ④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은 분리된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3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7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4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300억원

2. 전문대학 : 200억원

3. 대학원대학 : 10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

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

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
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
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
·산(學·研·産), 학·연(學·研)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
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교원 중 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학이 정한 계열별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논
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인정범위와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
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
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
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
의 확보는 제4조 본문을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겸임교원
등으로 할 수 있다.

2.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
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
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등
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
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학계열 학과의 부속시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1.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2. 치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3. 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3장 대학의 운영 기준

제13조(대학의 운영 기준) 대학은 설립 당시의 인가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연구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교지 및 교원의 확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중인 대학의 교사, 교지 및 교원) ①운영 중인 대학은 제5조제2항 및 별표2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14㎡(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14㎡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할 수 있다.

②운영 중인 대학의 교지는 제6조 및 별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겸임교원등을 포함하여 둘 수 있다.

④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교사 및 제3항의 교원의 기준 산정에 있어서 학생정원을 재학생 수로 할 수 있다.

1. 전년도 신입생 수가 입학정원 보다 적은 경우
2. 전년도 재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정원을 포함한다.) 수가 학생정원 보다 적은 경우

제15조(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제 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 해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가 통·폐합, 대학의 일부 이전, 정원 감소 등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동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교사 및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학의 일부 이전) ①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이전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정원을 기준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기본시설을 확보하면 주된 위치의 교지와 교사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이동하려는 경우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하는 교지를 기준으로 편제완성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한 경우
2.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원이동 전 학년도 이상의 교사확보를 유지

제17조(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의 안으로 위치변

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의 기준면적은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

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18조(학과·정원의 증설·증원의 기준) ①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

학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는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19조(주·야간 정원 조정의 기준) 대학이 주·야간 정원을 상호조정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편제완성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한 경우
2.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호조정 전학년도 이상의 교사확보를 유지

제20조(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정원의 증설·증원 특례)

①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7조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것
2. 제1호의 분야 외에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준(교원의 확보 기준을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것

제21조(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

닐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중 연구관련 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을 제5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운영 중인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임차하는 건물 및 토지(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는 지상권 및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 내에 학교 내 설치 금지된 시설·업종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교사 및 교지의 임대 등) ①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 ②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제14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확보한 교사 중 유휴 시설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임대할 수 있다.

- ③ 제6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3. 설립주체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두는 수익용기본재산 건축물

제23조(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후 편제완성정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폐합 후 대학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 신청 전년도에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보율은 통·폐합 후 유지되는 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학교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

②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에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

의 상호조정

제24조(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제25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3조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장 평가 및 규제의 재검토

제28조(학교현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12조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26

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의학교육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운영 중인 대학에 적용하는 기준과 제5조에 따라 구분되는 교사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구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고하고 평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용기본재산 경과조치) 이 영 제8조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10월24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05년10월25일~2015년7월23일에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기준을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으로 하고, 2015년7월24일 이후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기준을 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00억원, 대학원대학 100억원으로 한다.

제4조 (대학 간 통·폐합하는 경우의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폐합한 대학은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편제완성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

1. 입학정원 조정 당시의 교사, 교원(의학교육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통·폐합 신청 전년도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보율은 통·폐합 후 유지되는 학교와 동일한 종류의 학교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할 것

②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 영 제23조에 따른 통·폐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교육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통·폐합 신청 전년도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계열별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대 계 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 문 · 사 회 계 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 연 과 학 계 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 학 계 열	공학 등
예 · 체 능 계 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 학 계 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 고

1. 의예과 · 치의예과 · 한의예과 ·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 · 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기본시설) 기준면적(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m²)

구 분 \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학 생 1 인 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비 고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3]

교지기준면적(제6조제1항관련)

(단위 : m²)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 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 고 : "교사건축면적"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기본시설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4]

교원산출기준(제7조제1항관련)

(단위 : 명)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원1인당 학 생 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5]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대학원 신설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원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7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상호조정 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대 상	증원 기준
1.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삭제 <2022. 8. 9.> 다.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	2.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	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 문	소관부서	연락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관련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 203 - 6932, 6362
정원 조정 관련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 203 - 6921, 6664
대학원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 203 - 6255, 6254